

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2. 16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6. 2. 22

다. 상 정 일 자 : '96. 2. 29 (제42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

나. 제안이유

-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의 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코자함.

다. 주요골자

-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사항 규정 (안 제11조)
- 전수회관의 명칭과 위치 (안 제2조)
- 업 무 (안 제3조)
 - 농악 전수생에 대한 숙식 등 편의제공, 생활지도, 농악관련자료 전시 시연 및 기타 전수를 위한 사항
- 운 영 (안 제4조)
 - 운영주체 : 화순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전수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천 농악대에 위탁관리 운영
-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규정 및 위탁 취소 규정명시 (안 제5조, 제6조)
- 전수생의 자격 및 선발 (안 제7조)
 - 전수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거주지 및 남녀노소 관계없이 한천농악 전수를 희망하는 자로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함.

○ 지원 및 재정운영 (안 제8조)

- 군수는 전수관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가능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조례 제정안은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천농악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로써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 부 :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